

- 외국인 학생의 경우, 한국어를 제 1 외국어로, 모국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중 하나를 제 2 외국어로 인정

이장무(공대 기계설계학과)

—문제점

- 외국어고사의 중복시행으로 본연의 연구수행에 부담
- 현행제도 운영상의 융통성 결여
- 기초공통부문과 전문직업부문간의 구성비율 불균형

—개선안

- 고사제도 간소화
 - ① 석사입학시험시 일정수준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사입학시험 면제
 - ② 탈락자의 경우, 어학연구소로 하여금 technical writing이나 독해를 위주로 한 시험을 연중 일정횟수 시행토록 하여, 이에 응하거나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
 - ③ 교육법 시행령 검토와 수정건의
- 시대적으로 정보교환가치가 높은 언어를 택할 수 있도록 각 계열 혹은 단과대학에 운영권 부여
- 기본공통부문은 대학의 외국어교육단계에서 담당해야 할 부문이므로, 대학원에서의 외국어고사는 전문직업부문에 치중해야 함

서우석(음악대학 작곡과)

—음·미대 외국어 수강 현황

- 개강된 모든 외국어 중 택 1(3학점×4학기)
- 영어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도와 피리

—외국인 학생의 경우

- 외국어 시험으로 인해 입학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
- 출신국 언어를 영어 대체과목으로 인정하도록 건의

—대학 및 학과의 특성 고려 시급

- 동양화과와 국악과의 경우, 한문 및 중국어를 제 1 외국어로 지정하고 제 2 외국어는 기타 언어군에서 택 1
- 기타과에 대해서는, 제1/2외국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 외국어군에서 택 2

<自由討論>

박영한(사회대 지리학과)

- 발제에 이의 : 국내외의 제도현황 소개 미흡으로 발제자와 토론자간의 이해만 대립
- 윗수 과다 : 외국어교사는 입학시험시에만 시행하도록

김현욱(농대 축산학과)

- 외국어는 정보교환매체로서의 효용성이 중요
-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군의 확대 시급

김창효(공대 원자핵공학과)

- 참고 : 공대에서 발간한 대학원 외국어교사제도에 대한 연구자료
- 문제점
 - ① 시험의 성격 불분명
 - ② 중복 시행
 - ③ 시험제도상의 결함
- 개선안
 - ① 단과대학별 특성 인정이 관건
 - ②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발 필요

원윤수(인문대 불어불문학과)

- 시험운영상의 문제점
- 외국어는 정보교환매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지적수준향상의 기반이라는 면에서도 중요
- 근본적으로 외국어 교육 수준의 제고가 필수요건

고영근(인문대 국어국문학과)

- 대학원 외국어 시험과 아울러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 강화
- 논문작성능력 제고를 위해 국어능력 평가시험 필요

송동준(인문대 독어독문학과)

- 외국어의 유용성은 외국어 교육자체의 문제점과 연관
- 외국어의 습득이 사고체계의 전환과 발전에 주는 영향 감안

이승우(치과대학)

- 외국어교사는 선발을 위한 제도이므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격선 상향조정 불가피
-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연결시켜 석사과정 입학시 합격자는 이후 외국어시험 면제

신정현(인문대 영어영문학과)

- 외국어 교육 및 시험은 과학적 지식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가치적 측면 뿐 아니라 사고와 감정의 논리적 종합과 표현의 관점에서 검토해야
-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
 - ① 제1~2외국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 외국어군에서 택 2
 - ② 입학 및 자격시험시 전공과 외국어시험을 분리하여, 외국어 시험은 전문기관의 주관하에 연 2~3회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전공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부여

양철학(자연계 화학과)

- 이·공계열의 경우, 전공분야의 성격상 해당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2~3개의 외국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

이상익(인문대 국어국문학과/교무부처장)

- 학칙상 제약: 입학고사는 석·박사 공히 제도상의 여유가 있으나, 자격고사는 횟수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
- 토론내용의 공통분모
 - ① 영어: 현행 4회→2회
 - ② 제 2 외국어: 이·공계의 경우, 현행 박사과정 자격시험→석사과정 입학시험
- 문제점: 교육법 시행령상, 박사과정 자격고사시 2종의 외국어를 과하도록 명시
 - ① 가능한 방안(이·공계의 경우)
박사과정 자격고사 외국어과목중 제 2 외국어(불어/독어)는 석사과정 입시로 이전하고, 자격고사에서는 영어와 프로그래밍언어를 시행하도록 운영상의 변형 유도
 - ②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2종의 외국어에 대한 문교부측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, 인조언어를 인정해 줄지는 의문

김한곤(인문대 영어영문학과)

- GRE와 유사한, 학자로서의 소양 파악이 가능한 전문시험을 개발하여 입학 및 자격고사와 대체
- 언어 숙지도와 사고의 논리성과는 깊은 연관성 내재
- 현행 외국어고사의 선발기능으로서의 타당성 인정

이갑규(인문대 독어독문학과)

- 박사과정 자격고사중 제 2 외국어 과목은 석사과정 입학고사로 이전 시

행하고, 독문과에 개설되어 있는 시사독어, 독어 2, 3, 해석법 등의 과목을 1~2학기 수강해서 대비

이장무(공대 기계설계학과)

- 외국어시험을 제공받는 측의 견해 수렴이 선행요건
- 계열별 특성에 따라, 기술정보의 교환에 역점
- 과목이수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요

홍승오(인문대 불어불문학과)

- 중·고등교육의 문제점이 외국어수준의 저하 초래

이병한(인문대 중어중문학과)

- 언어교육은 사고체계 훈련의 기반

<결 론>

이현구(공대 화학공학과/교무처장)

-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
- 참고 : 수험당사자의 건의
 - ① 전공자격시험 기준강화
 - ② 영어문제 구성의 다양화
 - ③ 제 2 외국어 자격시험 기준완화
- 계열별 특성 반영하는 방안 연구
(현행 4계열—인문·사회, 자연 I, 자연 II, 예·체—에서 대학별로)
- 교과목이수로 대체하는 방안
- 외국인에게는 한국어를 필수외국어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
- 시행 횟수 조정은 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문교부측의 유권해석이 관건